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88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허성무·복기왕·이재관

서미화 · 송옥주 · 송재봉

김문수 · 주철현 · 박홍근

박해철 · 정혜경 · 이재강

이원택 • 정일영 • 최민희

김동아 • 전진숙 • 이수진

위성곤 · 채현일 · 오세희

문금주 • 이병진 • 박용갑

이광희 · 백승아 의원

(2691)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선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의지를 밝힌 것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여 군인·군속·노무자 등을 강제 징용하거나 부녀자를 강제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가하며 위안 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는 등 우리 민족을 억압·수탈하고 반인륜적 인 전쟁범죄 행위를 자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전 후 역사적인 만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A급 전범이 봉안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하고 역사교과서를 날조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를 옹호·미화하거나,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 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1운동으로 건 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 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헌법 정신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연히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독립운동 을 비방 또는 폄훼(貶毀)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3조).

- 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불인정 또는 정당화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함(안 제4조).
- 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나 독립운동 또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5조).
- 라.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6조).
- 마.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법률 제 호

일제의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의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행위,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립국가로서의 정통성과 민족정 기를 수호하고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란 일제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제에 의하여 저 질러진 집단살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의 강제동원, 일본군위 안부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전쟁범죄를 말한다.
- 2. "식민지배"라 함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이 구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국토를 강점하여 국민을 무력 지배함으로써 식민지로 전락시킨 침략·지배 행위를 말한다.
-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 4. "전쟁범죄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장 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

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식민지배에 대한 찬양 등)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이하 "헌법정신"이라 한다)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지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일제강점기 전쟁범죄의 부정) ①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3조의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불인정,정당화,미화 또는 지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3조의 방법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폄훼(貶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독립유공자 및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제3조의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나 독립운동 또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이

하 "전쟁범죄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미 사망한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독립유공자 및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욕) 제3조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쟁범죄 피해자등을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미 사망한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형법」상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3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